

『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평생교육법」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,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
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 주도의 평생학습에서 민간 주도
의 평생학습을 유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을 평생교육법 근거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법적근거
를 명확히 도모함(안 제1조)
-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시장의 임무를 규정(안 제4조)
- 구미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(안 제6조 ~ 제11조의3)
- 구미시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
로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함(안 제14조)
- 평생교육법 및 국가평생학습 추진 정책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
센터에 대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추진근거의 정당성을 도모함
(안 제17조)
- 민간주도의 평생학습 정책 추진과 경상북도 도책사업의 연계 및 체
계성을 명확히 하고자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의 활동사항에 대해 신설
하여 마을단위 평생학습 활성화를 수행하고자 함 (안 제18조 ~ 제2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
 -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 -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침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

- 상위 법령인 「평생교육법」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, 주민 주도의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마을과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